

#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및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나.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(안 제2조 ~ 제12조)

-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, 구성, 임무 및 운영기간 등

다.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(안 제13조 ~ 제15조)

-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, 심의, 소집 및 운영 등

라.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22조)

- 재난현장 조치, 재난상황의 통보,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, 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

### 3. 조 례 안 : 붙임

#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장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

제2조(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)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재난의 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 총괄·조정

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
3.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
4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·재정상 조치 요구
5.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원 요청
6.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실시
7.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
8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도 대책본부”)와 연계된 업무
9. 그 밖에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대책본부의 구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, 차장, 총괄조정관, 대변인,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.

② 본부장, 차장, 총괄조정관, 대변인,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본부장: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
2. 차장: 구미부시장
3. 총괄조정관: 안전행정국장
4. 대변인: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
5. 통제관: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·국장. 다만, 해당 실·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

6. 담당관: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
③ 본부장은 공무원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(이하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)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부장 : 대책본부 업무 총괄

2. 차장: 본부장 보좌

3. 총괄조정관: 재난상황관리,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, 본부장 및 차장 보좌

4. 대변인: 재난 수습홍보 총괄

5. 통제관: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

6. 담당관: 통제관 보좌,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 총괄

7. 실무반: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

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5조(직무대행)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·총괄조정관·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사무의 전결사항)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.

제7조(대책본부 운영기간)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
가. 하절기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
나. 동절기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

2.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대책본부 편성기준)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연재난: 별표 4
2. 사회재난: 별표 5

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(이하 “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상황판단회의)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본부장 등”이라 한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.

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.

1. 대책본부 운영 여부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
3. 재난상황의 심각성, 전개속도, 지속기간, 파급효과, 확대가능성 등의  
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
4.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 
사항

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1.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·국장
2.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
3.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(민간단체를 포함한다)의 관계자  
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
4.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)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·소속·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

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파견근무자의 복무 등)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)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.

### 제3장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

제13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)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의 의장은 본부장이

되고,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총괄조정관, 통제관, 담당관 및 소방서장. 단,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.

2.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·국장 및 과장

3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.

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(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)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)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

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,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대책본부회의의 심의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확정한다.

1.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3.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
4.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

제16조(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)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.

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재난현장의 피해상황,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
2. 구조·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
3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 설치 상황
4.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
5.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

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재난현장 조치)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재난상황의 통보 등)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, 경상북도지사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「재난

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.

제19조(위기경보의 발령 요청) ① 시장(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)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 ① 시장(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)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·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예보·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, 경상북도지사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경상북도지사,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
2. 기상상황, 홍수정보, 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
3.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
4.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

제21조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)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

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22조(재난수습 홍보)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, 정보공유·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
2.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
3. 법 제16조에 따른 시·군·구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
4.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
5.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
6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,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실무반의 임무(제4조제1항제7호 관련)

1. 자연재난의 경우

| 구 분            | 업무와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상황관리<br>총괄반 | <p>1) 재난정보<br/>· 수집 ·<br/>분석 및<br/>전파, 재<br/>난상황관<br/>리팀</p> <p>가)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<br/>나)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<br/>다)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<br/>라)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<br/>마) 본부장·차장 주재회의 준비,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<br/>자료 작성<br/>바)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<br/>사) 화상회의 준비·운영<br/>아)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·운영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<p>2) 상황보고<br/>서 작성<br/>팀</p> <p>가) 일일상황보고서 작성·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<br/>나)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<br/>다) 피해정보의 수집·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·<br/>분석<br/>라)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<br/>(1) 태풍·호우: 펌프장 가동, 저류지 확보, 기상변<br/>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<br/>(2) 대설: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<br/>(3) 지진(지진해일):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<br/>등 지진정보 파악<br/>마)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<br/>바) 인명·재산 피해상황 관리<br/>사)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<br/>아)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<br/>자) TV 방송 모니터링<br/>차) 민심동향, 미답사례 등 확인</p>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3) 상황관리<br>총괄 및<br>상황분석<br>평가팀 | 가)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<br>나)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·관리<br>다)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·보고<br>라) 대통령·국무총리·중앙대책본부장·본부장 특별지시 사항 처리<br>마) 비상근무 단계 결정<br>바)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<br>사)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<br>아) 재난발생지역의 예보·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<br>자) 상황근무자 근무명령<br>차) 상황근무자 식사·야식 등 후생·복지<br>카)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·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<br>타)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<br>파)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: NDMS)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|
|              | 4) 행정지원<br>팀                   |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협업기능<br>반 | 1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<br>반           | 가)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·지급 독려<br>나)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·관리(수용·급식 등)<br>다) 재해구호물자 확보·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<br>라)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<br>마)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<br>바) 사망·실종자 유족 대책, 응급생계구호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2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<br>반           | 가)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(재난폐기물, 위험물 등)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·관리<br>나)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br>다)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(운동장, 공원, 폐기물처리시설 등) 설치·운영의 지도·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) 긴급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    | 가)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<br>나)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<br>다)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<br>라)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<br>반           | 가) 공공·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<br>나) 공공·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br>다)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) 에너지공<br>급피해시<br>설 기능<br>복구반 | 가)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(가스, 전기, 유류 등)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<br>나) 시설·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br>다) 가스, 전기,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<br>라)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     | 가)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<br>나) 텔레비전·라디오·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·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<br>다)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<br>마) 언론발표 준비·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<br>바) 취재지원센터 운영(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)<br>사)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<br>아) SNS,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<br>자) 오보,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<br>차) 현장, 중앙대책본부, 수습본부,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|
| 7) 재난관리<br>자원 지<br>원반          | 가)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<br>나)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(Disaster Resourc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      | <p>Sharing System: DRSS)가동</p> <p>다)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</p> <p>라) 장비·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</p> <p>마) 다른 지역의 장비,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,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</p> <p>바) 재난관리자원의 비축,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8) 교통대책반         | <p>가)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</p> <p>나) 육상,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</p> <p>다) 교통두절구간(도로, 해상, 항공) 실태 파악 보고</p> <p>라) 연안여객선,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</p> <p>마)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</p> <p>바)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9) 의료·방역서비스지원반   | <p>가) 재난발생지역 의료·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</p> <p>나) 재난발생지역 의료·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</p> <p>다)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</p> <p>라)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·운영 지도·확인</p> <p>마)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·위생관리 지도·확인</p> <p>바)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·운영</p> |
|  | 10)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| <p>가) 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도·확인</p> <p>나)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</p> <p>다)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</p> <p>라)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11) 사회질서유지반      | <p>가)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</p> <p>나)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</p> <p>다)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</p> <p>라) 주민대피, 범죄예방 사전조치</p> <p>마)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·지원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12) 수색, 구조·구급반 | 가) 재난지역 인명 수색, 구조·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<br>나)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, 안치 지원<br>다) 재난현장의 특성,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<br>라)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·운영 지원<br>마) 군부대 등 수색,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|
| 다.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|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·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사회재난의 경우

| 구 분        |              | 업무와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재난상황총괄반 | 1) 상황관리총괄팀   | 가)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<br>나)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<br>다) 대통령·국무총리·중앙대책본부장·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<br>라)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2) 수습상황파악팀   | 가) 재난발생현황, 구조인력·장비 투입 현황 파악<br>나)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<br>다)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·처리<br>라) 지역사고수습본부, 대책본부,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<br>마)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<br>바) 구미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<br>사) 각종 여론·정보 수집, 민원 등 파악 |
| 나. 협업기능반   | 1) 긴급생활안정지원반 |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| 2)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3) 긴급통신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4)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5) 에너지공급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6) 재난수습홍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7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8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9) 의료·방역서비스지<br>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10) 자원봉사 지원 및 관<br>리반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11) 사회질서 유지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12) 수색, 구조·구급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다. 재난대응협업반 |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<br>수행           |  |
| 라. 현장지원반   | 수습본부,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재난수습<br>현장 파견 및 지원 |  |

[별표 2]

재난수습 주관부서(제4조제2항 관련)

| 재난관리<br>주관기관 |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교육부       | 가.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가. 우주전파 재난<br>나. 정보통신 사고<br>다.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|
| 3. 외교부       | 가.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법무부       | 가.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국방부       | 가.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행정안전부     | 가. 시 청사시설 사고<br>나. 공동구(共同溝) 재난(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<br>공동구는 제외한다)<br>다. 화재·위험물 사고<br>라.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<br>마.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<br>바. 풍수해(조수는 제외한다)·지진·화산·낙뢰<br>·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<br>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| 회계과<br>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 |
| 7. 문화체육관광부   | 가.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실과<br>(체육진흥과,<br>문화관광담당관) |
| 8. 농림축산식품부   | 가. 가축 질병<br>나. 저수지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통축산과<br>농정과                |
| 9. 산업통상자원부   | 가.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<br>나. 원유 수급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다. 원자력안전 사고(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)<br>라. 전력 사고<br>마.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보건복지부    | 가. 감염병 재난<br>나. 보건의료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미보건소, 선산보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환경부      | 가.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<br>나. 식용수(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<br>다.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<br>라.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<br>마. 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안전과<br>상하수도사업소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고용노동부    | 가.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투자통상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국토교통부    | 가.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<br>나. 고속철도 사고<br>다.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<br>라. 도로터널 사고<br>마. 식용수(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) 사고<br>바. 육상화물운송 사고<br>차.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| 도시과<br>교통행정과<br>도로과<br>상하수도사업소<br>건축과 |
| 14. 해양수산부    | 가. 조류 대발생(적조에 한정한다)<br>나. 조수(潮水)<br>다.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<br>라. 해양 선박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. 금융위원회    | 가.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. 원자력안전위원회 | 가. 원자력안전 사고<br>나.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. 문화재청     | 가. 문화재 시설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예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. 산림청      | 가. 산불<br>나. 산사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림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: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.

[별표 3]

대책본부 전결사항

| 일련<br>번호 | 사무내용            |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| 담<br>당<br>관 | 통<br>제<br>관 | 총괄<br>조정<br>관 | 차장 | 본부<br>장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
| 1        | 복무관리            |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근무자 출장명령·복명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2        | 상황관리            |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<br>단회의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재난 예보·경보 실시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3        | 대책본부<br>운영상황    |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| 4        | 피해조사<br>및 복구    |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<br>운영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○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| 5        | 대책본부<br>회의      | 회의 소집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회의결과 통보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6        | 특별재난지<br>역 선포 등 |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○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재난사태 선포 건의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○       |

[별표 4]

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(제7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호우·대설·태풍 시 편성기준

가. 비상단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 장   | 부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조정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제 관 | 주관부서 실(국)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(국)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 무 반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4+a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업무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) 상 황 관 리<br>총 괄 반<br>(3명) | 재난정보 수집<br>· 분석 및<br>전파, 재난<br>상 황 관 리 팀<br>(3명) | · 재난상황관리반 3명<br>- 재난상황관리반(2+a)<br>- 재난상황근무자(1+a) |
|       | 2)협업기능<br>반(a)              | 가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청소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시설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<br>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| ·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홍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원 지원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|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| • 교통행정과            |
|  |  | 자) 의료·방역<br>서비스 지원반 | • 구미보건소<br>• 선산보건소 |
|  |  | 차) 자원봉사 지원<br>및 관리반 | • 새마을과             |
|  |  | 카) 사회질서<br>유지반      | • 구미경찰서            |
|  |  | 타) 수색, 구조<br>• 구급반  | • 구미소방서            |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관리총괄반: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2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나. 비상1단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 장   | 부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조정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제 관 | 주관부서 실(국)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(국)장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 무 반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11+α+β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재난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) 상 황 관 리<br>총 괄 반<br>(10명) | 가) 재 난 정 보<br>수 집 · 분 석<br>및 전 파, 재<br>난 상 황 관 리<br>팀(3명) | • 재난상황관리반 3명<br>- 재난상황관리반(2+α)<br>- 재난상황근무자(1+α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상 황 보 고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)협업기능<br>반(α) | 작성팀<br>(3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관부서 직원 2명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다) 상황관리총<br>괄 및 상황<br>분석 평가팀<br>(3명) | 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<br>· 주관부서 직원 2명 |
|                | 라) 행정지원팀<br>(1명)                     | · 총무과 직원 1명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가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| · 청소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| · 시설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<br>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       | ·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홍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<br>원 지원반                    | ·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<br>서비스 지원반                  | · 구미보건소<br>· 선산보건소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 지원<br>및 관리반                  | · 새마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(β) | 카) 사회질서<br>유지반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구미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타) 수색, 구조<br>· 구급반                   | · 구미소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(β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기상청, 경찰청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        |

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수자원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도로공사, 지방국토관리청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보고서 작성팀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2.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행정지원팀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4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다. 비상2단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 장   | 부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조정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제 관 | 주관부서 실(국)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(국)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 무 반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17+α+β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재난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)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16+α명)   | 가) 재난정보<br>수집·분석<br>및 전파, 재<br>난 상황 관리<br>팀(5명) | · 재난상황관리반 5명<br>- 재난상황관리반(3+α)<br>- 재난상황근무자(2+α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상황보고서<br>작성팀<br>(3명)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<br>· 주관부서 직원 2명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상황관리총<br>괄 및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<br>· 주관부서 직원 5명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    | 분석 평가팀<br>(7명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라) 행정지원팀<br>(1명)            | • 총무과 직원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2)협업기능<br>반(α) | 가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반            | • 주민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반            | • 청소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| •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           | • 시설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<br>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| •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  | • 홍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<br>원 지원반           | •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| •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<br>서비스 지원반         | • 구미보건소<br>• 선산보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 지원<br>및 관리반         | • 새마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카) 사회질서<br>유지반              | • 구미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타) 수색, 구조<br>· 구급반          | • 구미소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(β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상청, 경찰청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도로공사, 지방국토관리청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|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보고서 작성팀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2.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행정지원팀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4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2. 지진(해일)·화산 시 편성기준

가. 구미시 비상단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 장   | 부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조정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제 관 | 주관부서 실(국)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(국)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 무 반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4+a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업무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) 상 황 관 리<br>총 괄 반<br>(3명) | 재난정보 수집<br>· 분석 및<br>전파, 재난<br>상 황 관 리 팀<br>(3명) | · 재난상황관리반 3명<br>- 재난상황관리반(2+a)<br>- 재난상황근무자(1+a) |
|       | 2)협업기능<br>반(a)              | 가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청소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시설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|  | 마) 에너지 공<br>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| · 과학경제과            |
|  |  | 바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  | · 홍보담당관            |
|  |  | 사) 재난관리자<br>원 지원반           | · 안전재난과            |
|  |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| · 교통행정과            |
|  |  | 자) 의료·방역<br>서비스 지원반         | · 구미보건소<br>· 선산보건소 |
|  |  | 차) 자원봉사 지원<br>및 관리반         | · 새마을과             |
|  |  | 카) 사회질서<br>유지반              | · 구미경찰서            |
|  |  | 타) 수색, 구조<br>· 구급반          | · 구미소방서            |

#### 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관리총괄반: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2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나. 비상1단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 장   | 부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조정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제 관 | 주관부서 실(국)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(국)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11+ $\alpha$ + $\beta$ 명 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무반 | 반장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재난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)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10명) | 가) 재난정보<br>수집·분석<br>및 전파, 재<br>난 상황관리<br>팀(3명) | · 재난상황관리반 3명<br>- 재난상황관리반(2+α)<br>- 재난상황근무자(1+α)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상황보고서<br>작성팀<br>(3명)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재난총괄부서 직원 1명<br>· 주관부서 직원 2명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상황관리총<br>괄 및 상황<br>분석평가팀<br>(3명)            | · 재난총괄부서 직원 1명<br>· 주관부서 직원 2명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행정지원팀<br>(1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총무과 직원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)협업기능<br>반(α)          | 가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청소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시설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공<br>급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 | ·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홍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<br>원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구미보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    | 서비스 지원반             | · 선산보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 지원<br>및 관리반 | · 새마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카) 사회질서<br>유지반      | · 구미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타) 수색, 구조<br>· 구급반  | · 구미소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(β) |                     | · 기상청, 경찰청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<br>수자원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농어<br>촌공사, 한국도로공사, 지방국토관리청,<br>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<br>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|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보고서 작성팀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  
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2.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, 재  
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행정지원팀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4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 
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  
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다. 비상2단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 장   | 부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조정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제 관 | 주관부서 실(국)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(국)장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 무 반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17+α+β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재난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) 상 황 관 리<br>총 괄 반<br>(16+α명) | 가) 재 난 정보<br>수 집 · 분 석<br>및 전 파, 재 | · 재난상황관리반 5명<br>- 재난상황관리반(3+α)<br>- 재난상황근무자(2+α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    | 난상황관리<br>팀(5명)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나) 상황보고서<br>작성팀<br>(3명)              | 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<br>· 주관부서 직원 2명 |
|  |                | 다) 상황관리총<br>괄 및 상황<br>분석 평가팀<br>(7명) | 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<br>· 주관부서 직원 5명 |
|  |                | 라) 행정지원팀<br>(1명)                     | · 총무과 직원 1명                     |
|  | 2)협업기능<br>반(α) | 가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반                     | · 청소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                    | · 시설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<br>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         | ·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<br>홍보반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홍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<br>원 지원반                    | ·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<br>서비스 지원반                  | · 구미보건소<br>· 선산보건소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 지원<br>및 관리반                  | · 새마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카) 사회질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구미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    | 유지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| 타) 수색, 구조<br>· 구급반 | · 구미소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(β) |                    | · 기상청, 경찰청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도로공사, 지방국토관리청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|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보고서 작성팀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  2.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  3. 행정지원팀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  4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[별표 5]

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편성기준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 장   | 부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조정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제 관 |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(국)장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 무 반 |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8+α+β+γ명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) 재 난 상 황<br>총 괄 반<br>(7명) | 가) 상황관리총<br>괄팀<br>(3명)      | ·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수습상황<br>과악팀(4명)          | ·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<br>·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|
|       | 2)협업기능<br>반(α)              | 가) 긴급생활<br>안정지원반            | · 주민복지과<br>· 사회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재난현장<br>환경정비반            | · 청소행정과<br>· 환경안전과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 긴급 통신<br>지원반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           | · 시설관리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) 에너지 공<br>급 피해시설<br>기능복구반 | ·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) 재난수습                     | · 홍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| 홍보반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| 사) 재난관리자<br>원 지원반   | ·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| 아) 교통대책반            | ·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| 자) 의료·방역서<br>비스 지원반 | · 구미보건소<br>· 선산보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| 차) 자원봉사 지원<br>및 관리반 | · 새마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| 카) 사회질서<br>유지반      | · 구미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| 타) 수색, 구조<br>· 구급반  | · 구미소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재난대응협업반(β) |                     | · 육군제50사단, 구미경찰서, 부산지방국<br>토관리청,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본<br>부, 한국전력공사대구경북본부 등 재<br>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|
|  | 현장지원반(γ)   |                     | · 해당 재난관리 실·국 소속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(근무방법)

1.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.
2. 재난상황총괄반·재난대응협업반·현장지원반 구성: 재난유형별 재난규모, 수습상황,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근무방법: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.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[별표 6]

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(별표 4 및 별표 5 관련)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비상단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<br>자연재난 | 가. 풍수해<br>(태풍·호우·대설) | 1) 비상<br>단계  | 가)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(이하 “기상특보”라 한다) 중 3개 이상의 시·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·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<br>나)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) 비상<br>1단계 | 가) 3개 이상의 시·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<br>나)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3) 비상<br>2단계 | 가)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<br>나)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<br>다) 호우·대설·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나. 지진·지진해일<br>및 화산   | 1) 비상<br>단계  | 가)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(이하 “특보”라 한다) 중 규모 4.0 이상(해역은 4.5 이상)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<br>나)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) 비상<br>1단계 | 가) 규모 5.0 이상(해역은 5.5 이상)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<br>나)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<br>다)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<br>라)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비상2<br>단계 | 가) 규모 5.0 이상(해역은 5.5 이상)의 지진발생이 통<br>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<br>나)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<br>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<br>다)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인<br>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|
| 2.<br>사<br>회<br>재<br>난 | 가.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(표준)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<br>른 경우<br>나.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<br>다.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제21조의2(지역대책본부회의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3.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
4.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| 소관 실 · 과    |       | 안전재난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류 형 욱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이 연 희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이 혁 진<br>(480-6738) |